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2. 11. 1.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 “27명 이내”를 “24명 이내”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4항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를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며”로 수정한다.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27명 이내”를 “24명 이내”로, 안 제4조제4항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를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며”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 명하며,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 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 장이 지명한 자, 한국산업단지공 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 ⑨ (생략)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 24명 이내----- ④ ----- ----- -----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며, ----- ----- ⑤ ~ ⑨ (원안과 같음)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 주민 및 기업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란 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말한다.
2. “보상금”이란 불산누출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등의 지급) 보상금등의 지급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피해로 한정한다.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2.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각 분야별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하여 기업부분과 농업부분의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보상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7조(지급의 제한) 보상금등은 누출사고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상금 결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보상금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지급청구) ①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상금의 구상)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상할 경우에는 보상에 소요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